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92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김도읍・박성훈・신동욱

백종헌 • 인요한 • 장동혁

김정재 • 구자근 • 조지연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기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자와 관계된 장소에까지 송달하도록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사유 등의 반송이 증가되어 우편송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달받을 자 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주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지 또는 거소지
- 2. 법인·단체·기관의 경우 주된 영업소·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제 1호에 따른 주소지·거소지
- 3. 송달받을 자가 송달하려는 행정청에 신고 또는 통지한 거소지
- 4.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송달받을 자가 동의하여 전자우편주 소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	제14조(송달) ①
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	
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주소·거소(居所)</u>	<u>주소 등으로서 다</u>
· 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	
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	
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	
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u> <신 설></u>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신 설>	 에 따라 신고한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법인・단체・기관의 경우 주 된 영업소・사무소 또는 대표 자의 제1호에 따른 주소지・
<u><신 설></u>	거소지 3. 송달받을 자가 송달하려는 행정청에 신고 또는 통지한 거소지
<u><신 설></u>	4.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여 전 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는 경

- ② (생략)
-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 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⑤ (생략)

⑥ (생략)

우에	한한다)
7 1	인인되기

② (현행과 같음)<삭 제>

4	 	

- 1. · 2. (현행과 같음)
- 3.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 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 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